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등 록 번 호: 20180565
최초등록일 : 2018.06.05
최종등록일 : 2025.06.04

www.foxgimbab.com

www.foxgimbab.co.kr

여 우 愛

정 보 공 개 서

(주)퍼스트에이엔티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5

(주)퍼스트에이엔티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상암동 1601) KGIT센터 1505호

대표번호 : 02-717-3380

팩스번호 : 02-717-9976

담당부서 : 070-8787-6160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퍼스트 에이엔티	여우앰 외 1개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센터 1505호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2.8.27.	2002.8.27.	백호근	1588-0672	02-717-9976
	법인등록번호	110111-2596611	사업자등록번호	105-86-43818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백 호 근	여우앰 외 1개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1505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백 호 근	02-717-3380	02-717-9976
사내이사	김 민 선	여우앰 외 1개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1505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백 호 근	02-717-3380	02-717-9976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여우앰]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여우愛	-
상 호	여우愛 00점	-
상표(서비스표)	여우愛	서비스표 등록번호: 4014406940000
광 고		-
그 밖의 영업표지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5,218,230	2,512,991	2,705,238	7,716,911	119,444	79,718
2023년	4,877,110	2,123,831	2,753,279	7,589,564	149,810	48,040
2024년	6,712,480	4,205,706	2,506,774	5,554,001	54,638	-246,505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백호근	대표이사	2002년 ~ 현재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김민선	사내이사	2004년 ~ 현재	이사	이사
	백서현	기타 비상무이사	2021년 ~ 현재	기타 비상무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백서정	기타 비상무이사	2022년 ~ 현재	기타 비상무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2	2	13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퍼스트 에이엔티	가맹사업 경영 (본 공개서 상 사업)	2018.5. ~ 현재	여우愛 분식전문점
		가맹사업 경영	2012.01 ~ 현재	바빈스 (등록번호 :20120100089) 라는 영업표지의 커피 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
----	------	-----------	-------------	-----	------

		여부(일자)		(등록신청자)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여우愛 (상표권)	가맹점 운영 (제 43류)	2018.9.11. 출원 2019.1.25. 등록	출원 제40-20180126725	김민선 (사내이사)	2029.1.25.
			등록 제40-14406940000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여우愛] 가맹사업 현황

1. [여우愛]를 시작한 날: 2018년 10월 1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18년 9월 6일)

2. [여우愛] 연혁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퍼스트 에이엔티	여우밥	백호근	2018.5. ~ 2018.9.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센터 1505호
	여우愛		2018.10 ~ 현재	

3. [여우愛] 업종

영업표지	업종	
여우愛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분식	김밥 및 분식류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여우愛]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49	47	2	57	55	2	47	46	1
서울	14	12	2	16	14	2	13	12	1
부산	1	1	-	2	2	-	2	2	-
대구	-	-	-	-	-	-	-	-	-
인천	1	1	-	2	2	-	4	4	-
광주	-	-	-	-	-	-	-	-	-
대전	2	2	-	2	2	-	-	-	-
울산	1	1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19	19	-	22	22	-	18	18	-
강원	1	1	-	1	1	-	1	1	-
충북	-	-	-	1	1	-	1	1	-
충남	3	3	-	3	3	-	2	2	-
전북	-	-	-	-	-	-	-	-	-
전남	3	3	-	2	2	-	2	2	-
경북	1	1	-	2	2	-	2	2	-
경남	3	3	-	4	4	-	2	2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여우爰]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40	11	2	2	2	47
2023	47	11	3	-	3	55
2024	55	5	9	5	1	46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첨 목록 4의 가맹점 현황문서를 확인하십시오.

6. [여우爰]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여우爰]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주)퍼스트 에이엔티	바빈스	20120100089	커피	56/1	54/2	48/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여우爰]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6개월 미만 영업한 10개 가맹점과 정상적인 운영

이 되지 않은 이천점은 매출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46개가 아닌 실제 45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8. [여우애]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여우애]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일)
2024	46	약 876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여우애] 가맹점과 관련하여 지사 및 지역총판이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여우애]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9. 광고 및 판촉 활동]쪽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2024.01~2024.12	99,737	99,737	-	-
(비공개)	(비공개)	2024.01~2024.12	(비공개)	(비공개)	-	-

별첨 목록의 손익계산서 상의 광고선전비 금액은 위 광고비 및 판촉비 금액과 당사의 바빈스 브랜드의 합계 금액임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예치기관이 아닌 아래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예치방법은 이 정보공개서의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에 나와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	(주)퍼스트에이엔티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예치가맹금범위내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5개월 소요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1회]의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정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 법조문)	조치일자	조치내용
(주)퍼스트에이엔티	의결제 2024-104호 (가맹2022서가0516) 재결 2024-020호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정보공개서 미제공 (법 제7조 제3항) 가맹계약서 미제공	2024.06.28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가맹2024기심1094)	법률	(법 제11조 제1항)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법 제9조 제1항 제1호)		250,000 천원
--	----------------	----	---	--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여우愛]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개점불가 시 전액 반환)	확정 금액 (계약 후 교육 시 : 중도금 지급 시)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000]				
가맹비	7,700	계약 체결과 동시	영업 개시 이전 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 약금을 공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사후 가입비로 전환)
교육비	3,300	계약 체결과 동시	교육 시작 1일 이전 에 계약 해지	영업교육을 위하여 소요된 실제비용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23,000]			
(현금)보증금	3,000	계약 후 교육 시 또는 중도금 지급 시	본사에 대한 금전채무 미지급, 계약해지 및 종료 후 철거 불이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본사 경영지도정책 미준수, 기타 손해배상 등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 등의 대금(완부재료 대금 포함)의 3배 이내, 현금로 구성(가맹 계약서 9조 참조)
약속어음 (채권설정)	20,000			약속어음(가맹계약 서 9조 참조)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34,000
가맹비	7,700
교육비	3,300
보증금	23,000(부가세 없음)

약속어음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에 따라 발행합니다.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63,800]	[6,380]			
인테리어 /설계	가맹본부	27,500	2,750	-계약금 : 계약체결과 동시 -착수금 : 인테리어공사 공사착수 5일전 -중도금 : 인테리어공사 착수 후 5일 이내 -잔 금 : 주방기기 입고 전	공사 전 계약취소	33㎡ 기준 3.3㎡ 늘어날 때마다 2,420천원 추가부담
주방 홀기기 /주방집기 /가구	가맹본부	27,500	2,750		설치 3일전 계약취소	33㎡ 기준 3.3㎡ 늘어날 때마다 1,100천원 추가부담
최초 물품구입비	가맹본부	8,800	880	가맹점 사업자 교육기간(7일~14일) 내	가맹점 사업자 사업개시 일 7일 전	33㎡ 기준 추정금액으로 가맹점사업자 사업환경에 따라 증액가능

[위 표의 금액은 33㎡(10평)를 기준으로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인테리어, 필요설비/정착물에는 철거, 소방시설, 가스, 상하수도, 샹시, 간판, 외장공사, 전기증설, 냉난방기 등은 포함 않고 별도비용이 부담됩니다.]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 기준으로 400천원(부가세 별도)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이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귀하는 귀하의 책임으로 점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귀하가 점포를 선정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설치장소, 통행인의 수, 지역의 특징, 업종의 특성에 따른 매출 성향 등을 귀하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 조언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조언과정 [당사 창업지원부 (전화:02-1588-0672)]
가맹점 사업자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조사 등 시장분석 → 최적의 입지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특별한 기준 없음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여우앰]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 내역은 첨부한 카탈로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1)	중도금(2)	잔금
금액(천원)	77,800 (부가세포함)	총액의 10%	40%	40%	10%
납부일		계약일	인테리어 공사 착수 5일 전	인테리어 공사 착수 후 5일 이내	주방기기 입고 전
비고	보증금 23,000 포함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9. 광고 및 판촉 활동]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가맹본부	월 440	다음 월 05일	-	-	-
리스료		해당없음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가맹본부 (50%) 전체 가맹점사업자 (50%)	분담금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분담금 납부 후 1년간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광고집행 시 반환 안됨	전국광고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가맹본부 (50%) 전체 가맹점사업자 (50%)	분담금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분담금 납부 후 1년간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광고집행 시 반환 안됨	가맹점 판촉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분담금	협력업체	전체 수수료의 100%	구매 즉시	유효기간 내 100% 만료 후 90%	-	가맹점 별 도입여부 자율 선택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3,300	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비 납부 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시행 후 반환 안됨	가맹점 개업 이후 가맹점 교육 필요 및 요청 시 지급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1,100~9,900	간판 변경 전 2주 이내	비용납부 후 3개월 이내 실행하지 않은 경우	간판 발주 후 반환안됨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영업지역 보증금		해당없음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전적가	교체.보수 전 5일 이내	비용납부 후 3개월 이내 실행하지 않은 경우	시설 발주 후 반환안됨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재고관리 비용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POS 사용료	협력업체	44	익월 지정일	프로그램 미작동일 만큼 차감		
키오스크 임대료	협력업체		익월 지정일	프로그램 미작동일 만큼 차감		1대 당
DID 프로그램	협력업체	5,500원	익월 지정일	프로그램 미작동일 만큼 차감		1대 당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5%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당사의 광고분담금이나 교육훈련비는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에 사전통지를 하고 분담금이나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와 계약 및 개점 후 당사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 지급 채무를 지체한 경우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 15%의 지연이자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4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설비관리	설비의 상태를 조사하여 계속 사용 여부를 판단	1년 1회	문의:여우애 사업부 (1588-0672)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1년 1회	문의:여우애 사업부 (1588-0672)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협의하여 결정]				
추가 교육비	협의하여 결정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7일 이전에 계약 해지		추가교육 필요시
점포 이전비	협의하여 분담	점포 이전 후 10일 이내	점포 이전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점포이전 합의시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면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연장된 가맹계약기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여우愛]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주)퍼스트에이엔티]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 및 자료제공비로 **[7,700]천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약속어음과 계약보증금 **[23,000]천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본 의무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식자재는 신선도를 고려하여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여우愛]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비 및 집기 관련 부분은 **IV-1-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항을 참조바랍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은 이를 준수해야 하며, 당사와 가맹계약 체결 시 본 사항을 유념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여우愛]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이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여우愛]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제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당사가 [여우愛]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전 고객	원·부재료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귀하의 영업지역 기준 점포와 점포 간 직선거리 200m 이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동일한 업종의 영업표지가 없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김밥 및 분식을 주 사업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	여우愛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와 점포 간 직선거리	200m
별도 상권이나 대도시 중심상권 시 점포와 점포 간 직선거리	50m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

[단, 귀하의 영업지역내에 천재지변, 도시계획변경, 대형건물의 입점, 백화점, 할인점, 역
사(기차, 지하철), 테이크아웃 매장, 유통집객 시설등과 4차선 이상 도로 및 하천, 구릉
등으로 인해 상권이 명확히 구분된 경우에는 귀하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
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
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 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 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여우애’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여우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귀하는 계약기간 중 영업지역 내에서 점포를 이전할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영업지역 이외의 타지역으로 점포를 이전할 경우 기존의 가맹계약이 해지가 되며 신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96%	4%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여우愛]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계약체결일로부터〕[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계약갱신일로부터〕[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계약서 제 5 조 [계약기간]> ② 甲은 乙이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甲은 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甲은 乙의 갱신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절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1. 乙이 본 계약서상의 가맹금 등의 금전적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乙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甲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乙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乙이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甲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乙이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甲이 乙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서 제 5조 [계약기간]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계약서 제 6 조 [계약의 해지]> ① 甲은 다음 각 호의 위반한 경우에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계약 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하고, 그 이행 또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乙이 제5조[계약기간] 제5항을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乙이 제8조[가맹비 및 로열티] 등 금전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3. 乙이 제10조[교육 및 훈련]을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乙이 제12조[운영매뉴얼 준수 및 감독 . 시정요구권] 각 항을 위반하거나 甲의 시정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할 경우 5. 乙이 제17조[乙의 영업양도 등]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6. 乙이 제20조[상품의 공급 및 사용에 대한 의무]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7. 乙이 제21조[지도지침준수 및 취급상품 제한]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8. 乙에게 제24조[상품공급 및 영업지원의 중단]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9. 乙이 제28조[乙의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 및 경업금지의무]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10.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계약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계약서 제 6 조 [계약의 해지]
<가맹계약서 제 24 조[상품공급 및 영업지원의 중단] 제1항> ① 甲은 다음 각 호의 경우 7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한 후 乙에 대한 상품 . 자재의 공급 및 영업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공급 조건을 지체 없이 乙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乙이 2개월에 걸쳐 2회 이상 상품 . 자재 등의 대금지급을 연체한 경우 2. 乙이 甲의 경영지도나 지침을 2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乙이 甲과 협의 없이 점포관리 업무를 5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4. 乙이 본 계약에 의해 약정된 광고나 판촉활동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비용의 대금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5. 乙이 조리미숙이나 고객서비스 불량으로 소비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시정하지 않아 소비자가 甲에게로 년 3회 이상 항의가 있는 경우 6. 乙이 노후화된 설비의 교체 . 보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7. 乙의 채무액이 甲이 수령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8. 乙이 제8조[가맹비 및 로열티] 5항에 의한 로열티를 1개월 이상 대금지급을 연체한 경우 9.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계약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계약서 제 24 조 [상품공급 및 영업지원의 중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6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6조 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6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6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6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6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차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6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6조 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이 계약의 내용은 甲, 乙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만 변경될 수 있다.	가맹계약서 제 34조 [계약의 변경]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인 환매제도가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의 양도	비고 ^④
<가맹계약서> 제 17 조 [乙의 영업양도 등] ① 乙은 甲의 사전동의 없이 점포 또는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乙은 점포 또는 영업을 처분 및 양도, 전대하고자 하는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에 甲에게 동의를 구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甲은 乙로부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동의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甲이 위 1개월 이내에 응답을 발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乙의 처분 등을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적법하게 乙의 점포 또는 영업을 양수하거나 전차한 제3자(이하 '영업양수인'이라 한다)는 乙의 甲에 대한 모든 영업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⑤ 영업양수인은 선택에 의해 乙의 잔여 계약기간 동안 권리를 포괄양수하거나 乙의 잔여기간과 상관없이 5조①항과 동일한 기간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선택사항 모두 교육비 및 자료제공비로 일금 칠백칠십만원(₩7,700,000)과 제9조[계약이행보증금]의 어음발행과 계약이행보증금을 甲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계약체결 시 甲과 영업양수인이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乙은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영업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한다.	문의:여우愛 사업부 (1588-0672)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자료제공비와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본사 협의	교육수료 및 교육비, 자료제공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본사 협의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본사 협의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지역 내에서] 귀하가 [여우愛]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분식류를 판매하는 업종 (김밥 및 분식 등)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여우愛 사업부 (1588-0672)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여우愛]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	매월 26일 (2월은 24일) 이상 점포를 개장하여야 하고, 연속하여 5일 이상 휴업할 수 없다	문의:여우愛 사업부 (1588-067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 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2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1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20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1개월	운영관리본부	
친절도(10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1개월	운영관리본부	
품질 관리(15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1개월	운영관리본부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항목	비고 ^④
청결(clean)	
1 점포주변을 깨끗이 청소되어 있다	
2 간판 및 POP는 전구의 끊어짐이나 파손, 더러움이 없다.	
3 출입구 매트 깨끗이 청소되어 먼지나 오염이 없다.	
4 점포 유리 및 커튼류는 더러움이나 파손이 없다.	
5 문턱 위는 불필요한 물건이 놓여져 있지 않고 깨끗이 정리 정돈되어 있다.	
6 POS POP는 더러움, 책바람, 구겨짐이 없이 바르게 부착되어 있다.	
7 의탁자는 파손이나 오염 없이 깨끗하다.	
8 플로어 바닥은 오염이 없고 쓰레기가 떨어지면 즉시 청소되고 있다.	
9 트레쉬박스는 부착물 등이 제대로 투착되어 있고 페인트의 벗겨짐이나 내. 외부가 깨끗하다.	

10 벽에 걸린 그림액자, 판넬 등은 더러움이 없이 바르게 걸려 있다. 11 식목, 조화 등은 더러움이나 파손이 없다. 12 조명류는 끊어짐이나 파손 오염이 없다. 13 천정이나 공조기는 파손이나 얼룩이 없어 깨끗하다. 14 세면대 거울은 물기가 떨어져 있지 않고 깨끗이 닦여져 있다. 15 화장실청소는 플로어라운드와 병행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체크표에 기입하고 있다. 16 화장실 변기, 바닥, 환기통, 조명류는 파손이나 오염이 없다. 17 주방 세면대는 깨끗하고 손톱 브러시, 세제의 설정이 되어있어 손 살균을 철저히 하고 있다. 18 주방기기, 후드스텐드, 닥트는 오염이나 기름때가 묻어있지 않다. 19 주방바닥은 dry 유지가 철저히 되어있고, 싱크대 주변은 정리정돈 되어있다. 20 창고, 탈의실, 휴게실, 책상주변은 정리정돈 되어있다.	
친절도 (service)	
1 근무중인 MATE 전원의 복장은 기준으로 지켜지고 있다. 2 내점하는 고객에게 전원이 다이밍 좋고, 활기차게 인사를 하고 있다. 3 스마일과 눈인사의 타이밍도 좋다. 4 제품의 서빙은 스피드감이 있고 화이트 다스타의 사용도 바르게 행해지고 있다. 5 거스름돈은 양손으로 고객의 손바닥에 확실히 건네주고 있다. 6 제품을 건네기 전에 반드시 최종 체크를 하고 있다.(수량, 품목, 포장의 오염, TO시영수증) 7 기다리게 하는 경우 웨이팅 룰을 지키고 있다. 8 기다림을 없애기 위해 프로덕트 컨트롤 밑 메뉴의 소개를 바르게 행해 원활히 대처하고 있다. 9 플로어라운드의 로테이션은 바르게 실시되고 있다. 10 고객에게 실례의 행동은 없다(말씨, 무례, 말대꾸, 기기나 신발을 끄는 잡음)	
품질(quality)	
1 원재료의 선입.선출을 위해 입고일자가 기입되어 있다. 2 원재료의 보관은 매뉴얼대로 시행되고 있다. 3 원재료의 구입은 운영기준대로 시행되고 있다. 4 권장가격은 제대로 고시되고 있다. 5 냉동.냉장고의 온도는 기준으로 되어있다.(콜드테이블, 쇼케이스 포함) 6 각 기기의 설정온도는 기준으로 되어있다(그리들, 후라이어, 토스터기, 번스위머) 7 부메뉴의 가지수는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다. 8 주메뉴()의 셋팅모양은 매뉴얼대로 시행되고 있다. 9 주메뉴()의 셋팅모양은 매뉴얼대로 시행되고 있다. 10 주메뉴()의 셋팅모양은 매뉴얼대로 시행되고 있다. 11 상품의 정량과 온도는 기준으로 지켜지고 있다. 12 주문 상품의 모양은 찌그러짐이 없고 제대로 나오고 있다. 13 주문 후 상품은 제시간에 나오고 있다. 14 기기류는 정량 및 제품온도는 기준으로 지켜지고 있다. 15 돈이나 신체에 접촉한 손으로 쿠키나 래핑은 하지 않는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여우愛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상이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부담금 확정	판촉 행사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	행사에 따라 본사와 가맹점이 사전 협의된 비율			(가맹점) 월 할인금액 제시 → (가맹본부) 자료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담액 송금	할인서비스 등의 종료시까지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부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경우 당사에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 및 위약벌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 및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에게 금전채무의 불이행 및 주요한 경영지도 정책(타 가맹점들이 준수하는)을 준수하지 않을 시, 가맹본부는 2회의 서면 시정 경고 후에도 가맹점사업자가 시정이 안 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를 유의하시어 귀하는 당사의 가맹점으로 당사는 물론 타 가맹점에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액 및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계약 후 교육 시 또는 중도금 지급 시 계약이행보증금 일금 이천삼백만원(₩23,000,000)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금 이천만원(₩20,000,000)은 약속어음으로 발행하되 본 가맹계약 제11조 계약위반 및 경영지도정책 각 호를 위반하거나 제9조 2항에 해당하여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乙이 발행한 약속어음이 가맹본부에 지불되는 조건으로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7일이상 무단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본부에게 금이천만원(₩20,000,000)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약벌의 대가로 가맹점사업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해당 발행한 약속어음이 가맹본부에 귀속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IV-1 이하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D-46 ~ 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 ~ 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서울보증보험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 ~ 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 ~ 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 ~ 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서울특별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판촉 지원	가맹점 오픈시 판촉인원 파견 및 개점 전반 지원	가맹점의 매장면적, 예상매출액에 따라 인원 수 및 기타 차등 지원	개점 전 (가오픈 지원) 으로부터 3일간	매장 별 상이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점사업자 가맹개설 전 교육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교육계 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 자에게 제시 → 경영교육	가맹본부 부담	문의: 운영관리팀 (1588-0672)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2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문의: 운영관리팀 (1588-0672)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여우애]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자금 지원	본 사	최대 5천만원	신용 대출	임원 면담 후 결정
프랜차이즈 신용 대출	우리은행	총 창업비용의 30% 이내	신용 대출	은행 확인 일정신용등급 이상

[구체적인 신용제공 조건은 귀하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 지원을 원하는 경우 1588-0672로 상담하기 바랍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없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여우愛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훈련 LIST>

교육명	최소시간	비용(단위:천원 부가세포함)	교육방식	기한	비고
교육내용					
개업 교육	약 5일	교육비용 330만원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개업이전	필수 교육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소양과 서비스 마인드 및 실제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지식을 배양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최초의 교육					
운영 교육	미정	교육시작일 3일전까지 지 통지	실습교육 집단 강의	미정	필수 교육
가맹점 또는 가맹점의 직원에게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의 매출증대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한 교육					
특별 교육	미정	교육시작일 3일전까지 지 통지	실습교육 집단 강의	미정	필수 교육
신제품교육, 보수교육, 영업방침의 변경사항 교육, 시정명령에 따른 소집교육 등의 교육 (가맹점간담회, 가맹점역량강화, 등 명칭 여하를 불문)					

[운영교육과 특별교육은 일정이나 시간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여우愛]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상기 <교육/훈련 LIST>와 같습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당사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
<가맹계약서 제 10 조 [교육 및 훈련]> ⑤ 乙이 甲의 신메뉴 교육에 참가치 않은 경우 乙은 신메뉴를 판매할 수 없다. ⑥ 乙이 연속하여 보수교육에 2회 불참할 경우 甲은 물품공급량이나 품목을 제한 할 수 있다. <가맹계약서 제 5 조 [계약기간]> 갱신거절 사유 <가맹계약서 제 6 조 [계약해지]> 계약해지 사유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상암DMC점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누리꿈 스퀘어 R112호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6년 3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별첨 1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별첨 3 > 물품 구입 및 임차 목록

1. 원,부재료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설비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별첨 4 > 가맹점 현황목록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1588-0672)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